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합416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3나200426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합41672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변론 종결2022. 9. 2.

판결 선고2022. 12. 2.

주문

1. C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B 사이에 2021. 7.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7. 28. 접수 제759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i) 2015. 5. 22. 신용보증원금을 154,4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ii) 2016. 12. 16. 신용보증원금을 126,4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iii) 2018. 8. 23. 신용보증원금을 739,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C에게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21. 9. 17. 및 9. 23. 거래정지라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C을 대신하여 2021. 11. 24. 주식회사 D에게 합계 797,253,448원을, 2021. 11. 10. 주식회사 E에게 합계 129,097,713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다. 한편, C은, i) 2021. 9. 13.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9. 13. 접수 제93659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A

명의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ii) 2021. 7. 27. 피고 B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내지 6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7. 27. 접수 제75994호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C과 A, B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라. 한편, C은 2021. 8.경부터 4대 보험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였는데, C의 보증사고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 등을 통해 확인된 C의 적극재산은 합계 3,632,000,000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은 합계 4,887,358,434원 상당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바, 각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 중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표1]

1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	1,280,000,000
2	이 사건 제1부동산	1,000,000,000
3	이 사건 제2 내지 6부동산	1,352,000,000
합계	3,632,000,000	

[표2]

1	원고	926,351,161
2	피고 A	340,000,000
3	피고 B	1,000,000,000
4	주식회사 H	488,528,570
5	주식회사 H	688,984,718
6	I	500,000,000
7	J보증보험	170,349,918
8	주식회사 K	400,000,000
9	주식회사 E	64,562,773
10	주식회사 D	308,581,294

1	원고	926,351,161
합계	4,887,358,43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전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미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 또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초과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위와 같은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C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담보조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C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당시 C은 약 3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업을 통해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등 자력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고, 2021. 7. 27.경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C의 요구에 따라 이를 해지해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교 동창이라는 C과 피고 A과의 관계, 피고 A이 대여한 대여금의 규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A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 A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우선, '2018. 5. 28.경 C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으로 2020. 12. 31.까지 10억 원 및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은 위와 같은 재산분할 협의 약정의 일부 이행에 불과하므로, 상당한 재산분할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금액에는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양육비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의 설정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밖에 피고 B 역시 'C과 이혼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C과 피고 B의 관계, 피고 B이 주장하는 약정금지급 채무의 이행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 B의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21. 7. 28. 접수 제7599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성지호

판사김병휘

판사정한영

별지